



## 일본 공적 개호보험 보험료 추이와 정책동향

김미화 연구원

일본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공적 개호서비스 인정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음. 개호서비스 인정자 수는 급증하는 반면 현역세대의 인구는 감소함에 따라 현역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일본 정부는 세대 간 공정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개호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일부 소득이 높은 계층의 이용자 본인 부담금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호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 일본의 공적 개호보험<sup>1)</sup>은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급여비용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

- 개호서비스 인정자 수는 2000년 말 256.2만 명에서 2017년 1월 말 기준 629.2만 명<sup>2)</sup>으로 2.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2016년 기준 인정자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81.5%에 이름
- 수급자 증가로 인해 총 급여비용도 2000년 3.6조 엔에서 2016년 10.4조 엔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

### ■ 일본 정부는 개호보험의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음<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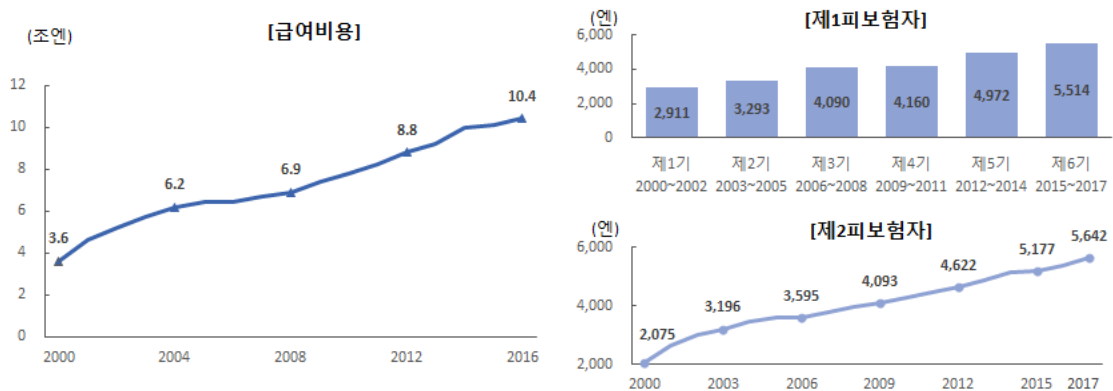
-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의 월평균 보험료가 2000년에는 2,911엔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5,514엔으로 거의 2배 수준으로 인상되었음
- 제2호 피보험자(40~64세)의 보험료도 2000년 2,075엔에서 2017년 5,642엔으로 2.7배 증가하였음

1)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제도로 2000년에 도입되었음

2) 후생노동성(2017), 介護保険事業状況報告の概要

3) 개호보험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50%) 및 보험료(제1호 피보험자 22%, 제2호 피보험자 28%)로 충당됨

〈그림 1〉 개호보험 급여비용 및 월 보험료 추이



자료: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mhlw.go.jp/toukei\\_hakusho/toukei/](http://www.mhlw.go.jp/toukei_hakusho/toukei/))

■ 개호서비스 인정자 수가 급증하는 반면 개호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현역세대의 인구는 감소함에 따라 현역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개호서비스의 인정자 수는 2016년 630만 명에서 2035년에는 900만 명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피보험자(40세 이상 인구) 대비 인정자 비율은 2016년 8.2%에서 2050년 14.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인정자 중 65세 이상 인구가 97.7%를 차지하는 반면, 개호보험 재정의 약 30%를 부담하는 40~64세 현역세대의 개호서비스 인정자 비율은 전체 인정자 대비 2.3%에 불과함
- 현역세대 인구는 2015년 4,250만 명에서 2050년 2,89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일본 정부는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지속가능한 개호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개호보험법 개정<sup>4)</sup>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개호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일부 소득이 높은 계층의 이용자 본인부담금<sup>5)</sup>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호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임
  -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연 수입이 340만 엔 이상이면 개호서비스 이용 시 총비용의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4)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강화 및 개호보험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4월 18일 개호보험법 개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5) 개호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제도 도입 당시 10%에서 2015년부터 고소득층에 한해 20%로 상향 조정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8년 8월부터 30%로 조정될 예정임

- 후생노동성은 개호보험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3%(약 12만 명)가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정함
- 또한, 40~64세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자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던 방식에서 총 보수 비율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변경하기로 함
  - 현행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각 의료보험자(협회건강보험 또는 건강보험조합)가 가입자 수에 따라 책정하여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됨
  - 반면 총 보수 비율에 따른 방식은 각 보험자의 총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협회건강보험(중소기업 직원 중심)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건강보험조합(대기업 중심 가입자)의 보험료가 증가하게 됨

■ 우리나라도 인구고령화 심화와 베이비 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2008년 21.4만 명에서 2015년 46.8만 명으로 118.1%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과 인구고령화의 심화로 인정자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kiri](#)